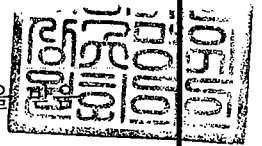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이유서

성명	한글	이 봉 의	일본명	
	한자	李 鳳 儀	이 명	자 善翼 / 호 松阜
출생 연월일	1839년 2월 14일		사망 연월일	1919년 3월 13일
	본적			
京城府 觀水洞 72번지 [1915년 주소]				
주요 경력	1904년 이전			
	1839. 2.14	출생 (전주이씨 효령대군 정효공파 족보; 조선귀족열전, 213쪽)		
	1869. 2.25	부총관 (고종실록, 1869년 2월 25일)		
	1877. 4. 6	경기도 수군절도사 (고종실록, 1877년 4월 6일)		
	1879.12. 4	충청도 병마절도사 (고종실록, 1879년 12월 4일)		
	1883.5.19~10.14	좌변포도대장 (고종실록, 1883년 5월 19일, 10월 14일)		
	1889. 5.13	한성부 판윤 (고종실록, 고종 26년 5월 13일)		
	1892.10.29~1894.6.22	좌변포도대장 (고종실록, 고종 29년 10월 29일, 고종31년 6월 22일)		
	1894. 7. 4	형조 판서 (고종실록, 고종31년 7월 4일)		
	1896.9~1897.5.6	강원도관찰사 (고종실록, 1896년 9월 10일, 19일; 승정원일기, 1897년 4월 5일)		
1898. 1. 1	궁내부 특진관 (고종실록, 1898년 1월 1일)			



1901. 8. 5	대한제국 정부로부터 훈4등 팔괘장을 받음 (고종실록, 1901년 8월 5일)
1901.11.16	헌병사령관 (승정원일기, 1901년 10월 6일)
1902. 9. 7	육군참장 경무사, 遷陵時 陪往大將 (고종실록, 1902년 9월 7일)
1903. 5. 7	육군 부장 (고종실록, 1903년 5월 7일)
1903. 5.13	군부 대신 (고종실록, 1903년 5월 13일)
1904년 ~ 1945년	
1904. 1.14	원수부 군무국 총장 (고종실록, 1904년 1월 14일)
1904. 1.21	扈衛隊總管에 임명 (고종실록, 1904년 1월 21일)
1904. 2.10	원수부 검사국 총장 (고종실록, 1904년 2월 10일)
1906. 9. 4	대한제국 정부로부터 훈2등 태극장을 받음 (고종실록, 1906년 9월 4일)
1906. 9.15	判敦寧司事 (고종실록, 1906년 9월 15일)
1910.10. 7	일본 정부로부터 한일합병 공로로 남작 수작 (조선총독부관보, 1910년 10월 12일; 조선귀족이력서, 52쪽; 조선신사보감 귀족부[1914], 53쪽; 조선신사대동보, 35쪽)
1911. 1.13	일본 정부로부터 2만 5천원의 은사공채 증서 받음 (朝鮮貴族略歷[齋藤實文書100.4])
1912. 8. 1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음 (관보[일본내각], 1913년 5월 29일 부록)
1912.12. 7	일본 정부로부터 정5위에 서위됨 (조선총독부관보, 1912년 12월 12일)
1919. 3.13	사망 (조선총독부관보, 1919년 4월 1일)



조 사 내 용

1.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7호(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와 관련하여

1) 남작 수작

▶ 『朝鮮總督府官報』, 1910년 10월 12일.

“明治四十三年十月七日 依朝鮮貴族令授男爵 李鳳儀”

▶ 『매일신보』, 1910년 10월 8일, 「授爵者氏名」.

“授爵者가 左와 如다더라. (중략) 男爵의 部 (중략) 李鳳儀 (후략)”

▶ 『매일신보』, 1911년 2월 23일, 「爵記本書奉授式」.

“이미 보도한 바와 같이 山縣 정무총감은 칙명을 받들고 어제 22일 오전 11시 총독관저에서 國分 인사국장, 桑原 비서관, 藤波 통역관, 陶山 통역관이 열한 명을 초청하여 조선귀족 후작 이재완 이하 60여 명에게 대하여 작기 본서 봉수식을 거행하였는데, 각 귀족의 3분의 2는 모두 新製 대례복을 입고 기타는 연미복을 입은지라. 정오 12시에 식을 종료하였고 수여식에 참열한 자의 씨명은 左와 같더라.

(중략) 동[남작 - 작성자] 이봉의 (후략)”

▶ 「朝鮮人に對する授爵に關する意見」, 『齋藤實文書』 100.6, 1926; 「朝鮮貴族略歷」, 『齋藤實文書』 100.4, 1929; 『매일신보』, 1910년 10월 7일, 9일, 11일, 1911년 2월 23일; 『續陰晴史』 권14(庚戌[1910] 10월 7일; 『신한민보』, 1910년 11월 2일.

1910年 10月 7日 朝鮮貴族令에 의해 일본 정부로부터 한일합병의 공로를 인정받아 男爵 작위를 받음.

【참고사항】 작위 세습

- 출전: 『조선총독부관보』, 1919년 5월 5일; 『조선귀족이력서』, 52쪽.

1919년 4월 29일 아들 李起元이 남작 작위를 습작.

2. <특별법> 제2조 제19호(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본 제국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와 관련하여

1) 은사공채 수령

▶ 『每日申報』, 1911년 1월 14일 2면, 「公債本券交付」.

“優渥한 聖旨에 基하여 하사하신 귀족 班族의 은사공채권은 어제 총독부에서 이미 보도한 바와 같이 차례로 교부하였는데, 많은 수의 인원에게 일시에 교부하기가 어려우므로 오전 오후 두 번에 나누어 山縣 정무총감이 國分 인사국장과 韓波 總申 官을 대동하고 총감실에 설치한 교부장소에서 직접 교부할 때 수령자는 별실에서 수령증을 쓰고 물러나온지라. 오전에 교부받은 자는 45명이니 (중략) 동[남작 - 작성자] 이봉의 (중략) 오후 2시에 각기 수령을 끝마치고 모두 물러갔더라.”

▶ 「朝鮮人に對する授爵に關する意見」, 『齋藤實文書』 100.6, 1926.

일본정부로부터 25,000원의 은사공채를 받음.

2)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훈포상 및 서위

▶ 일본내각, 『관보』, 1913년 5월 29일 부록.

1912년 8월 1일 <明治四十五年勅令第五十六號>에 의거 한일합병에 관한 공로를 인정받아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음.

▶ 『조선총독부관보』, 1912년 12월 12일.

“大正元年十二月七日 敍正五位 男爵 李鳳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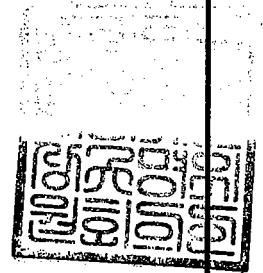
【참고사항】 대한 제국정부로부터 받은 훈장

- 출전: 『고종실록』, 1901년 8월 5일; 『승정원일기』, 1901년 6월 21일.

1901년 8월 5일, 훈4등 팔괘장을 받음.

- 출전: 『고종실록』, 1906년 9월 4일; 『승정원일기』, 1906년 7월 16일; 『관보』, 1906년 9월 13일; 『조선귀족이력서』, 5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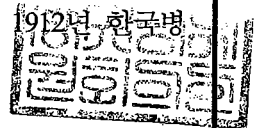
1906년 9월 4일, 훈2등 태극장을 받음.



1. 이봉의는 한일합병직후인 1910년 10월 7일 일본 정부로부터 합병의 공로를 인정받아 남작 작위를 받고 1919년 3월 13일 사망할 때까지 그 작위를 유지하였다. 그의 이러한 수작(受爵) 행위는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7호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에 해당된다.

2. 이봉의는 1911년 일본 정부로부터 한일합병의 공로로 2만 5천원의 은사공채를 받았다. 1912년 8월 1일에는 한국병합기념장을 받고, 12월 7일에는 정5위에 서위되었다. 이러한 행위는 <특별법> 제2조 제19호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침략 전쟁에 협력하여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본 제국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에 해당된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이봉의는 일본 정부로부터 1910년 한일합병 이후 남작의 작위와 함께 1911년 2만 5천원의 은사공채를 수령하였으며, 1912년 한국병합기념장을 받고, 정5위에 서위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이봉의의 행위를 <특별법> 제2조 제7호, 19호에서 정하는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다.

2006년 9 월 11 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